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7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부분적인 조례 자구 수정(안 제1조~제7조)
- 나. 소상공인 정의 근거 현행화(안 제2조)
- 다. 소상공인 직접 비용 지원 근거 및 재난피해 소상공인 비용지원 항목 신설(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나. 입법예고 결과(2020. 10. 15. ~ 11. 4.): 의견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결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범위 확대와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사업 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4조제4호에서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비용 지원'을 명시하여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음.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0. 2. 4. 제정되어 2021. 2. 5.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기본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 및 타자치구 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조례 지원사업 현황

연번	구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비고
1	서울시	제10조의4(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본조신설 2020.05.19.
2	동작구	제8조제7호(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 보전금 등	제정 2020.04.16.
3	서대문구	제8조제2항(소상공인 지원) -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신설 2020.05.06.
4	서초구	제6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신설 2020.07.28.
5	강남구	제6조제5호(경영안정 지원) -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신설 2020.11.06.

-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원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정, 2021.2.5. 시행)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8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안 제1조,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위·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결과(2020. 10. 15. ~ 10. 25.):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결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및 기준

-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제2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정하였음. 제출된 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점포밀집기준”과 “상인 조직 결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 제11조)

-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 내용 수정의 필요성

- 안 제3조의 “상인조직의 대표자”를 “상인”으로 수정.

본 조례상 상인조직의 대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전통시장 인정 신청 시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상위법의 표현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제5호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삭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법 개정 이후로 정비되지 않아 골목형상점가의 첨부서류는 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를 준용한다고 볼 때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회칙(정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라는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 명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또한,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시장의 인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위 내용을 본 조례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검토결과

-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골목 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특별법 개정과 그 내용을 구체화한 본 조례안의 발의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히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던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

·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2.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9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0.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3년을 연장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한 구세 감면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면 적용시한 개정(안 부칙 제3조)

-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입법예고 결과(2020. 10. 15. ~ 11. 4.):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결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세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감면 사항 등을 유지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제안되었음.

○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